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지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18

발의연월일: 2025. 1. 3.

발 의 자: 박지혜・이기헌・김영환

강유정 • 문정복 • 위성락

김윤덕 · 임미애 · 오세희

강준현 · 김문수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잡지, 정보간행물, 전자간행물, 기타간행물에 해당하는 것을 정기간행물로 정의하고 있으며, 그 중 전자간행물은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을 뜻함.

이에 따라 통신망을 이용하는 webzine이나 appzine의 경우 전자간행물에 포함되지 못해 기타간행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, 월 2회 이상발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기타간행물에도 해당되지 않아 잡지 외 간행물을 신고함에 있어 분류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webzine이나 appzine 등 새로운 형식의 간행물이 전자간행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자간행물의 정의에서 "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" 문구를 삭제하여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임(안

제2조제1호다목).

법률 제 호

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다목 중 "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"를 "컴퓨터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자간행물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타간행물로 신고된 간행물이 제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간행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전자간행물로 신고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		
1. "정기간행물"이란 동일한 제	1		
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			
발행하는 간행물로서 「신문			
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			
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			
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			
가.・나. (생 략)	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		
다. 전자간행물 : <u>통신망을</u>	다 <u>컴퓨터</u>		
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			
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			
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			
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			
간행물			
라. (생 략)	라. (현행과 같음)		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		